

2026년 9월 7일(월)

용인시보

차 례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75호 [[입법예고]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 시

- 용인시 고시 제2026-503호 [천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중로 2-1호, 중로 3-1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용인시 고시 제2026-504호 [천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공 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58호 [공시송달공고[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수용재결]]
- 용인시 공고 제2026-2572호 [[공고] 도시계획시설(중로 1-94) 공사완료]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40호 [2026년도 하반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39호 [2026년도 하반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지원·대여 신청 접수 주체를 관할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중복되는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조)

나. 사문화된 개인 대상 융자 사업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다. “상환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라. 조례 인용 조항을 부합하게 정비하고, 장학금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화(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항목 삭제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서식)

3. 자치법규안: 덧붙임

4. 예고기간: 2026. 9. 7. ~ 9. 28. (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복지정책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1-6193-3133
- 팩 스: 031-6193-2219
- 전자메일: onse213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정하여 조례”를 “정하여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활기금을”을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을”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0호 및”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 또는 지원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로 조사·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신청 및 교부)”를 “(교부 신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차상위자”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채용기업, 자활사업참여자:”를 “채용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활근로사업단은”을 “지역자활센터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활기업”을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환하도록”을 “반환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상환금”을 각각 “대여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추천”을 “제2항에 따른 추천”으로, “하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를 “하며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선발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순위자가 있는 경우 학업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금정산)”을 “(지원금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 정산보고서”를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법인·단체·기업)”를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를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8조의2 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1. 신청학생 인적사항란의 “주민등록번호” 및 2. 보호자의 인적사항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1.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를 “사업자번호(법인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팀장 직위.성명	자활지원팀장 김치환
	주무관 성명.전화	이민정 (6193-3133)

현 지 조 사 서

①조사대상	기관명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소재지				
②대상 현황	구분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채용기업 ☐ 기타()			
	사업명				
	참여자	☐ 조건부 수급자 (명) ☐ 일반 수급자 (명) ☐ 차상위자활 (명)			
③신청 현황	구 분	☐ 지원 ☐ 대여			
	내 역	총 사업비	신청 금액	자체부담액	자부담방법
④조사내역	조 사 부 문		평 가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성		상	중	하
	사업 내용의 타당성		상	중	하
	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성		상	중	하
	실행가능성 및 구체성		상	중	하
조사자 의견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인 또는 서명)

자활기금 지원()·대여() 결정 통지서

1. 대상자

가. 기관명:

나. 대표자명:

다. 사업자번호(법인번호):

라. 소재지: (전화 :)

2. 지원(대여)금액: 금 원(₩)

3. 지원(대여)용도:

4. 지원(대여)조건

가. 사업목적: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라. 대여조건

1) 상환조건: 년 거치 년 상환

2) 상환형식: ☐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3) 대여이율: 연 %

4) 연체이율: 연 %

5. 유의사항

위의 지원(대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여)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대여)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여)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대여)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을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운영규모)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의 자금은 기금 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운영규모) ① ----- ----- ----- -- 정하여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 범위·재원 등은 「 <u>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 ----- ----- . ----- ----- ----- 조례 ----- ----- ----- ----- -----.
제3조(지원·대여 신청 및 결정) ① <u>자활기금을</u> 지원 또는 대여 받으려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u>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	제3조(지원·대여 신청 및 결정) ① <u>조례 제4조에</u> 따른 기금을 ----- ----- <u>별지 제2호서식</u> -----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0호 및 조례
제4조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3. 자활사업참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
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
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단체
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활기금 지
원·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
동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와 현지
조사서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단서 신설>

----- 시장-----
----- . 다만, --

-----.

1.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
업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 또는 지원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

----- . 다만, 위원회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로 조

④ (생략)

제4조(신청 및 교부) ①·② (생략)

제5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1억 원 이내

2. (생략)

2의2.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이하 “채용
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5천만원
이내

3. 자활사업참여자: 2천만원 이내

② 대여금의 상환 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채용기업, 자활사업참
여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2. (생략)

③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상환금은 매 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 고지한다. 단, 자활근로사업단

사 ·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교부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여 및 상환)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2. (현행과 같음)

2의2. -----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

<삭 제>

② _____
_____.

1. ----- 채용기업: -----

2. (현행과 같음)

③ -----

-----, ----- 지역자활센터는 -----

은 융자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채권보전 및 보증)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활기업의 보증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략)

제7조(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보전 및 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자활기업-----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금 반환) ① -----

반환하도록 -----

-----.

제9조(감면조치) -----

-----대여금-----

환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상환금 감면 을 신청한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 ①·② (생 략)

③ 추천 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로 하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 선으로 한다.

제13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 순위) 시장은 조례 제12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 우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는 때에는 학업성적이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6조(기금정산) ① (생 략)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여금 ----

-----.

제12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
--- 하며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선발한다.

제13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 순위) ① ----- 제16조에 따른-----

--.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순위자가 있 는 경우 학업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제16조(지원금 정산) ① (현행과 같 음)

② -----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개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사업목적
6. 사업개요
7. 소요경비 재원: (단위 : 원)

총 사업비	지원(대여) 요청액	자체 부담액	후 원 금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 별 칩 "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대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법인·단체·기업)

1. 법인(단체·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지원(대여) 신청 금액:
3. 지원(대여) 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단위 : 원)

총 사업비	지원(대여) 요청액	자체 부담액	자부담 방법	비 고

사. 사업계획 및 법인·단체 등의 정관 또는 규약: "별첨"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 -----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

1. 법인(단체·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지원(대여) 신청 금액:
3. 지원(대여) 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단위 : 원)

총 사업비	지원(대여) 요청액	자체 부담액	자부담 방법	비 고

사. 사업계획 및 법인·단체 등의 정관 또는 규약: "별첨"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
기금 지원(대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①조사대상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가족현황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교육정도	건강상태	직업
③재산상황				④가구월간소득			
⑤자활발달	자활발달						
	근로능력		상		중		하
	자활의욕		상		중		하
	타 지원금 수혜여부		여		부		
조사자 의견 (상담내용 등 서술)	희·청년 시 자활능력		상		중		하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 _____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용인시청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대여() 결정 통지서

1. 지원(대여)대상자
○ 성명(법인·단체·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소 : _____ (전화 : _____)
○ 원(원) : _____
2. 지원(대여)금액: 금 _____ 원(₩)
3. 지원(대여)종도:
4. 지원(대여)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대여조건 :
 - 상환조건 : _____ 년 거치 _____ 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이율 : 연 %
 - 연체이율 : 연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대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원금보통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여)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대여)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여)를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대여)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권하(법인·단체·기업)를 _____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①조사대상	가정명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소재지					
②대상 현황	구분	☐ 자활기금 ☐ 지역자활센터 ☐ 재용기금 ☐ 기타()				
	사업명					
③신청 현황	상여자	☐ 조경부 수급자 () 명 ☐ 일반 수급자 () 명 ☐ 차상위계층 () 명				
	구분	☐ 직원 ☐ 대역 ☐ 총사업비 ☐ 신청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비				
④조사내역	조사부문		별가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성		상	중	하	
	사업 내용의 타당성		상	중	하	
	신청 금액 산정의 적절성		상	중	하	
⑤조사 의견	실행가능성 및 구체성		상	중	하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자 : _____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재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대여() 결정 통지서

1. 대상자
가. 가정명:
나. 대표자명:
다. 사업자번호(법인번호):
라. 소재지: _____ (전화 : _____)
2. 지원(대여)금액: 금 _____ 원(₩)
3. 지원(대여)종도:
4. 지원(대여)조건
가. 사업목적: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라. 대여조건:
 1) 상환조건: _____ 년 거치 _____ 년 상환
 2) 상환형식: ☐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3) 대여이율: 연 %
 4) 연체이율: 연 %
 5) 연체이율: 연 %
5. 유의사항
위의 지원(대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원금보통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여)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대여)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여)를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대여)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권(기업)을 _____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인)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 | 총 사업비 | 신청액 | 자체 부담액 | 후원금 | 비고 |
|-------|------|--------|-----|----|
| 사업기간 | | | | |
| 사업계획 | "별첨" | | | |
| 신청계좌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 | | | | | |
|------|--------|--------|-------|----|
| 출자업비 | 신청액 | 자여 부담액 | 후원금 | 비고 |
| 사업기간 | | | | |
| 사업계획 | " 별첨 " | | | |
| 신청계좌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은행명 : | |

산철인 : (인 포는 서명)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

추천기관담당자		성명 : 직책 :		담당자 연락처			
추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종 참여기간	
	주소					연락처	
	각종 참여 현황	참여작품사업명					
		주요수행업무					
		작품참여도	(상 / 중 / 하)				
		작품의식	(상 / 중 / 하)				
각종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결정지원 계획 및 참여계획 기술							
매년 신청 내용	대여료 용도		신청 금액		원	가공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목적						
추천 사유	추천자의 신청자 각 정보						
	- 작품의식을 추천자가 후원한 신청자의 정보 - 신청자 본인(타인)을 향한 지원 계획						
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를 대어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년 월 일 추천자구명: (직인)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

추천기관담당자		성명 : 직책 :		담당자 연락처			
대상 현황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료 기원 현황	별(인명/단체명)					
		제출 연월일					
		소재지					
		사업의 종류					
대여 사유 내용	신청 금액	_____ 원		신청 사유			
	개입 계획	출 사업비	대여 신청액	가예 부담액	가부담 방법	비고	
추진 사유	-						
상기와 같이 용인지 자활가를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진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음인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자
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음인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음인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 1. 제는 서명하는 중에 / 표시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주명	직과주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작성 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 장애인 [] 의료 [] 주거 [] 해당없음

감면요청금액	채권 금액	상 금액	원금	이자(연이자 포함)
--------	-------	------	----	------------

아첨연기작성법 (서로)

감면요청사유

구비서류 감면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자활지원금 신청서」 제10조 및 「음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여부를 심사·결정 할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동의사항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족관계, 소득재산,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기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10년간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감면 여부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제공 동의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로) 등

□ 제공받는 자명: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상기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10년간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감면 여부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행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음인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장학금 신청서			
1. 신청 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과명	
성명		학년반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보호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2. 보호자의 인적사항			
주 소		성명	남 · 여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격려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 년 반	학년 반	
주 소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 성 격	중·고등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총 이수학점	평균 학점	/ 백분위학점
2. 학습태도 및 품행				
3. 추천자 의견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1. 신청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교명		학년.반	(학점명)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와 가계(양육장지인등록자 불가)			
2.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 학생과의 관계	
3. 가 구 용 령 : ☐ 수급자 ☐ 차상위자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년 반	
주 소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 성 격	중·고등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총 이수학점	평균 학점	/ 백분위학점
2. 학습태도 및 품행				
3. 추천자 의견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읍·면·동장 추천서			
1. 신청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 년 반	학년 반
주 소			
보호자의 관계			
2. 보호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음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읍·면·동장 추천서			
1. 신청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년 반
주 소			
보호자의 관계			
2. 보호자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음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단체·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2. 지원(대여)받은 내용

○ 구 분: 지원금(), 대여금()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대여)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인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단체·기업명):

○ 사업자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2. 지원(대여)받은 내용

○ 구 분: 지원금(), 대여금()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대여)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인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고시 제2026-503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5번지 일원의 천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중로 2-1호, 중로 3-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음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031-6193-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7.
용 인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ㄱ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ㄴ 명칭 : 천리지구 중로 2-1호선, 중로 3-1호선 신설 공사
-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ㄱ 성명 : 용인천리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정종복
 - 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 (남동)
-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ㄱ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ㄴ 준공예정일 : 2028. 5. 15.
- 마. 사업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30	이동 소로 1-4	중로 3-1	일반도로		2021.03.11. (용고21-135호)	
시행	중로	2	1	18	집산도로	30	이동 소로 1-4	중로 3-1	일반도로			
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70	이동읍 천리 793-2	이동읍 천리 816	일반도로		2021.03.11. (용고21-135호)	
시행	중로	3	1	12	집산도로	270	이동읍 천리 793-2	이동읍 천리 816	일반도로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사 시행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 이 하 참 조 자 료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중로 2-1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이동읍 천리	793-2	전	3,851	1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2	이동읍 천리	793-5	장	2,778	48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3	이동읍 천리	806-2	대	2,171	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신*부동산 신탁주식회사			
4	이동읍 천리	807-2	장	507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5	이동읍 천리	1101	구	1,597	10	-	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10,904	794					

○ 토지조서(중로 3-1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이동읍 천리	793-2	전	3,851	5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2	이동읍 천리	793-5	장	2,778	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3	이동읍 천리	802	답	1,435	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4	이동읍 천리	805	답	783	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5	이동읍 천리	806-1	전	1,104	6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6	이동읍 천리	806-2	대	2,171	1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신*부동산 신탁주식회사			
7	이동읍 천리	807-1	답	955	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8	이동읍 천리	811	답	3,778	8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9	이동읍 천리	812	답	2,450	2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10	이동읍 천리	814	답	2,850	2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11	이동읍 천리	816	전	3,349	3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12	이동읍 천리	960-3	전	1,016	38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13	이동읍 천리	1098	구	3,332	428	-	농림축산 식품부			
14	이동읍 천리	1101	구	1,597	564	-	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31,449	3,831					

용인시 고시 제2026-504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1번지 일원의 천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음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031-6193-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7.
용인시장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사업
 - └ 명 칭 : 천리지구 근린공원 및 유수지 조성사업
- 다. 사업시행자
- └ 성 명 : 용인천리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정종복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 준공예정일 : 2028. 5. 15.
- 마. 사업규모
- 근린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1	공원	근린공원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1번지 일원	10,407	‘21.03.11 (용고 제2021-135호)	유수지(1,561 ㎡) 중복결정
시행	1	공원	근린공원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1번지 일원	10,407		

○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1	유수지	유수지 (저류시설)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9번지 일원	1,561	'21.03.11 (용고 제2021-135호)	근린공원 중복결정
시행	1	유수지	유수지 (저류시설)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9번지 일원	1,56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사 시행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 이 하 참 조 자 료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근린공원]

연 번	소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이동읍 천리	793-1	전	4,388	3,800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2	이동읍 천리	793-2	전	3,851	2,334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3	이동읍 천리	793-3	대	287	287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4	이동읍 천리	793-4	대	248	248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5	이동읍 천리	793-5	장	2,778	1,499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6	이동읍 천리	793-8	대	334	334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7	이동읍 천리	793-9	전	295	295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8	이동읍 천리	793-10	전	1,582	54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9	이동읍 천리	798	전	4,780	47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10	이동읍 천리	1100	도	337	187	국토교통부	국				
11	이동읍 천리	1100-2	도	249	94	국토교통부	국				
12	이동읍 천리	1100-3	도	89	89	국토교통부	국				
13	이동읍 천리	1103	천	118,678	28	국토교통부	국				
14	이동읍 천리	1103-15	천	701	522	국토교통부	국				
15	이동읍 천리	1103-21	천	757	95	국토교통부	국				
16	이동읍 천리	1103-22	천	1,810	493	국토교통부	국				
17	이동읍 천리	1103-23	천	7	1	국토교통부	국				
계				141,171	10,407						

[유수지]

연 번	소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이동읍 천리	793-1	전	4,388	328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2	이동읍 천리	793-2	전	3,851	8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3	이동읍 천리	793-9	전	295	214	용인천리지역 주택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73, 2층(남동)				
4	이동읍 천리	1100	도	337	6	국토교통부	국				
5	이동읍 천리	1100-2	도	249	94	국토교통부	국				
6	이동읍 천리	1100-3	도	89	89	국토교통부	국				
7	이동읍 천리	1103	천	118,678	28	국토교통부	국				
8	이동읍 천리	1103-15	천	701	302	국토교통부	국				
9	이동읍 천리	1103-21	천	757	95	국토교통부	국				
10	이동읍 천리	1103-22	천	1,810	397	국토교통부	국				
계				131,155	1,561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금을 청구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2026. 9. 7.

용 인 시 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 공시 송달 목록 : ‘붙임’ 참고

□ 공 고 기 간 : 2026. 9. 7. ~ 2026. 9. 22.

□ 보상금 청구 장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원천로41번길 4, 1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31-338-4357)

□ 보상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31-338-4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공고 제2026-2572호

공 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 1-94)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용 인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ㄱ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ㄴ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 1-94호) 확장공사
- 다. 사업시행자
 - ㄱ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ㄴ 성 명 : 용인시장(기흥구 도로과)
- 라. 사업시행기간
 - ㄱ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ㄴ 준공예정일 : 2026. 9. 30.
- 마. 사업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94	19.2~ 42.3	보조간선 도로	1,868	광로2-3	대로3-24	일반 도로	97.11.13. (용고1997-162)	
시행	중로	1	94	1.3~ 7.2	보조간선 도로	139.6	하갈동 259-18	하갈동 261-34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장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26년도 하반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제작함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2. 제공일자 : 2026년 9월 07일
3. 제공받은 자 : (주)삼부전산
4. 제공목적 : 상반기(전체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징수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납부금액, 고지번호
7.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정기분)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26. 9. 07. ~ 2026. 9. 27.(20일간)
9. 공고방법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9월 07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39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제작함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7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2. 제공일자 : 2026년 9월 7일
3. 제공받은 자 : (주)삼부전산
4.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6.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 2,163건(자동차)
7.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시설물)번호, 납부금액, 고지번호
8.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9.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7.(20일간)
10. 공고방법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